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66
----------	-----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5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9년 1월 31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84)과 2019년 1월 31일 오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88), 2019년 2월 1일 서울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6), 이상 3건을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년 2월 26일)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차량 및 시설에서 영유아 방치와 적정수준 이하 급식제공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차량 사고 및 안전 사고를 줄이고 안심보육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어린이집 차량”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2)
-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어린이집 차량에서 영유아 방치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19조의2)
-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19조의3)
- 어린이집 시설 내 사각지대에서 영유아 방치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 시장이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시장이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차량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설&gt;</u></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설&gt;</u></p>	<p>제1조의2(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어린이집 차량”이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u></p> <p>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시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육사업의 기본방향</u></li> <li>2. <u>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u></li> <li>3. <u>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u></li> <li>4. <u>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u></li> <li>5. <u>보육비용에 관한 사항</u></li> <li>6. <u>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u></li> <li>7. <u>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p>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p>제5조(기능) ----- -----</p>

심의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생략)

<신설>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  
진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  
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  
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  
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  
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육교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  
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  
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 ·  
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③ (생략)

제24조(교육) ① ~ ③ (생략)

<신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를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 제3항 및 제4항-----

-----.